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1995호(號) 1933(昭和 8)년 9월 1일 금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416호(號)

1930(昭和 5)년 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138호(號)(조선총독부철도·사설철도·궤도 및 항로 간 여객 및 수·소하물 연대운송규칙[朝鮮總督府鐵道·私設鐵道·軌道並航路間旅客及手·小荷物連帶運送規則]) 중(中)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33(昭和 8)년 9월 1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

제29조(條) 소하물(小荷物)에 대해서는 별단(別段)의 정(定)함이 있는 것을 제(除)하고 운임 요금(運賃料) 착불(著拂)의 취급(取扱)을 하지 아니함.

제29條의2 국선(局線)과 조선철도주식회사선(朝鮮鐵道株式會社線: 함북선[咸北線]을 제[除]함), 조선경남철도주식회사선(朝鮮京南鐵道株式會社線), 금강산전기철도주식회사선(金剛山電氣鐵道株式會社線), 남조선철도주식회사선(南朝鮮鐵道株式會社線) 및 조선경동철도주식회사선(朝鮮京東鐵道株式會社線) 간(間) 발착(發著) 화물(貨物)에 대해서는 국(局)이 정한 바[所定]에 따라 대금인환(代金引換)의 취급(取扱)을 함.

별표(別表) 연대운송(連帶運送)의 범위(範圍) 특종취급사항란(特種取扱事項欄) 중(中) 아래 [좌(左)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(1) 조선철도주식회사(朝鮮鐵道株式會社)의 부문[部]에 「사(社) 광궤선(廣軌線) 소속(所屬) 표기(標記) 하중(荷重) 십톤(十噸)의 화차(貨車)는 차급화물(車扱貨物)의 운송(運送)에 사용하지 아니함」을 추가(追加)함.

(2) 조선경남철도주식회사(朝鮮京南鐵道株式會社[광궤(廣軌)])의 부문[部]에 「사(社) 소속(所屬) 표기(標記) 하중(荷重) 십톤(十噸)의 화차(貨車)는 차급화물(車扱貨物)의 운송(運送)에 사용하지 아니함」을 추가(追加)함.